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1. 12 Vol. 28



P&B Policy & Business Report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법제사법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Ⅱ.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2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기획재정위원회

2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7 4)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29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32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41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45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7 5) 탄소세법안

행정안전위원회

49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0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54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66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9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0 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73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7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80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84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86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법제사법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18 | 현원 18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6 | 비교섭단체 1



위원장
박 광 온

선 거 구 경기 수원시정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서울 은평구갑
재선(20대, 21대)



위원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초선(21대)



위원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초선(21대)



위원
김용민
경기 남양주시병
초선(21대)



위원
김종민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재선(20대, 21대)



위원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위원
소병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초선(21대)



위원
송기헌
강원 원주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초선(21대)



위원
최기상
서울 금천구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재선(20대, 21대)



위원
권성동
강원 강릉시
4선(18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초선(21대)



위원
장제원
부산 사상구
3선(18대, 20대, 21대)



위원
전주혜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조수진
비례대표
초선(21대)

열린민주당



위원
최강욱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소관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산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소관법률
법무부	1. 가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5. 검사정원법
	6. 검사징계법
	7. 검찰청법
	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11.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12. 공익신탁법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4. 공증인법
	15. 공탁법
	1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7. 교정공제회법
	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0. 국가배상법
	21. 국가보안법
	22.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23.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2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6. 국적법
	27. 국제민사사법공조법
	28. 국제사법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국제수형자이송법
	3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3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 난민법
	3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3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36.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37.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9. 등기특별회계법
	4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문	소관법률
법무부	41.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42. 민법
	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민사소송 등 인지법
	45. 민사소송법
	46. 민사소송비용법
	47. 민사조정법
	48. 민사집행법
	4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50. 밀항단속법
	5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52. 벌금 등 임시조치법
	5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5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5. 범죄인 인도법
	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57. 범죄피해자 보호법
	58.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59. 법교육지원법
	60. 법률구조법
	61. 법무사법
	6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63. 변호사법
	64. 변호사시험법
	6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6. 보안관찰법
	6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70. 부동산등기법
	7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3.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74. 부정수표 단속법
	7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7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77. 비송사건절차법
	78.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79. 사면법
	8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상법
	84. 상법시행법
	85. 상업등기법
	86. 선박등기법
	87.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부문	소관법률
법무부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92. 소년법
	9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4. 소액사건심판법
	95. 수표법
	9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7. 소액사건심판법
	98. 수표법
	99. 신원보증법
	100. 신탁법
	10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3.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4. 어음법
	105. 외국법자문사법
	106.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107. 유실물법
	108. 이자제한법
	109. 인신보호법
	110.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111. 입목에 관한 법률
	11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1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1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1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18. 정부법무공단법
	119. 제조물 책임법
	120.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21. 주택임대차보호법
	122. 중재법
	12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2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2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8. 집행관법
	1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132. 출입국관리법
	1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3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35. 통신비밀보호법
	136. 특별감찰관법

부문	소관법률
법무부	13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3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4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4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5. 한국법학원 육성법
	146. 행정소송법
	147.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4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49. 형법
	1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52. 형사소송법
	15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5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56. 혼인신고특례법
	15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제처	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감사원	1. 감사원법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법
법원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3. 법관징계법
	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5. 법원조직법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	1. 군사법원법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4. 군형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융감독원법안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대학법안
		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	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외교통일위원회		3. 재외동포보호법안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3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27.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2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어촌 · 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장애여성지원법안
		3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4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730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2.08. 제안

제안이유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459호



민 형 배

선 거 구	광주 광산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1.22.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때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상황과 사업·경영·재무위험 등 미래전망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과 피해 급증으로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대응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여부 또한 기업의 미래전망 및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아직 신용평가회사는 전통적·관성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시각으로만 기업을 평가함.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에도 신용평가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낙관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했고, 계속적인 화력발전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음. 이는 국책금융공기업과 은행, 금융투자업자까지 고위험 좌초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임. 이 투자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과 예금입니다. 잘못된 투자는 실패에 따른 손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35조의11제2항).

3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680호



우 원 식

선 거 구	서울 노원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2.02.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여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중심의 운영 및 자율책임 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따라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 · 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 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안 제8조 및 제9조)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민간위원의 추천권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 이내에서 국무총리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4인, 총연합단체 추천 2인 이내(나머지 1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로 구성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명시(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 및 노동이사제 도입(안 제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마.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 시행(안 제24조의2)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강제 조항을 두어 여성임원 목표제를 이행하도록 함.

바.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

사.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 강화(안 제28조)
기관장 연임시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의 제정 · 통보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50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581호



강 병 원

선 거 구	서울 은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1.29. 제안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임.

이러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 · 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 · 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미래자동차 연구 · 개발 및 수요창출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등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영상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와 규제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에 규제심의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565호



안 호 영

선 거 구	전북 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장수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1.26.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 ·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 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1까지 신설 등).

Policy & Business Report



Ⅲ.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4.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5.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6.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 가상자산업법안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9.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3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23. 청년세법안
	○	24. 탄소세법안
		2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재외국민기본법안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재외동포기본법안
		1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1.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6 · 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18.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3.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이장 ·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1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4. 청 · 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간호·조산법안
		2. 간호법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제입양법안
		1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4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4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49. 장애인권리보장법안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5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지역공공간호사법안
		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2723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9.28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제안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방법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 · 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64조의2 신설)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518호



박 용 진

선 거 구	서울 강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상임위원회	2020.07.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3.17.	상정
		제안설명
	2021.03.22.	상정
		제안설명
	2021.04.26.	상정
	2021.06.23.	상정
	2021.11.17.	상정
	2021.11.23.	상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2 신설).

참고자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구분

구 분		내 용	제재처분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제174조)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시세조종 (제176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부정거래 (제178조)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78조의2)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경미하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과징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

부당이득액	벌금형 (징역형 없이 단독부과 가능)	징역형 (벌금형 병과)
0~1억원 미만(액수미상 포함)	하한 : 부당이득액의 3배 상한 : 5억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하한 : 부당이득액의 3배 상한 : 부당이득액의 5배	상동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상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상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119호



이 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8.19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17	상정
		제안설명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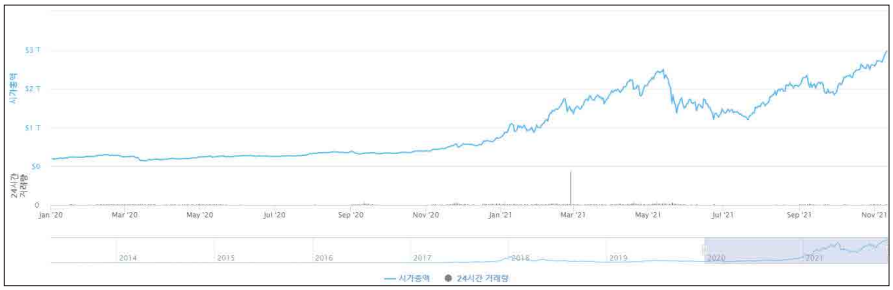
제안이유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제8조의3 ·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참고자료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추이



주 : 2020.1.1. ~ 2021.11.10.

자료: coinmarketmap.com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개)

구 분		2020	2021				
			1월	3월	5월	7월	9월
거래소 가입계정	신규가입	900,121	513,836	1,533,751	1,151,146	180,260	299,109
	총가입자	6,062,822	6,576,658	9,288,799	13,215,193	13,713,436	14,335,228
실명계좌 연동	신규가입	394,342	237,105	828,190	574,999	65,261	141,717
	총가입자	1,644,459	1,969,019	3,844,738	6,598,368	6,872,171	7,279,124
원화 예탁금		2,660,371	3,891,595	10,771,391	17,414,793	12,158,344	14,810,337
일평균 거래금액		990,538	6,185,196	13,963,424	24,975,975	7,288,593	11,571,374

주1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한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기준
주2 : 참고로 2021년 9월말 기준 가상자산 예탁금 잔액은 76.2조원

자료 : 한국블록체인협회

4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899호



이 낙 연

선 거 구	서울 종로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8.04.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23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및 제82조).

주요발언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1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기금자산운용지침에 ESG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와 기금운용 평가 항목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자산운용원칙이 있습니다. 현행 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이 되겠는데 개정안은 이 운용원칙에 투자 대상 관련 ESG 등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지침에 포함할 사항을 지금은 투자 기준·절차 그다음에 투자자산별 배분, 실적 평가 공시 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 대상 관련 ESG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공적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고 둘째, 투자자가 다수의 국민에 해당하고 투자 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현행 원칙에 공공성 원칙이 있는데 이 공공성 원칙

에 ESG 투자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아직까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6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평가 항목에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지침의 준수 여부 등은 매년 초 기금관리주체에 통보되는 기금운용평가지침과 기금존치평가지침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포함됐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공적기금이 자산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을 여기서처럼 법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보다는 각 기금의 특성, 자율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평가라든지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성기금들이 전체 한 67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48개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단기, 잠깐 미스매치 나는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ESG는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 측면이 있어서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약간 경직적인 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운용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영 위원



ESG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화두고 또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침이라든가 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법률에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 서병수 위원



저도요.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류성걸



좋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계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

기획재정위원회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732호



용 혜 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기본소득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12.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15.	상정
		축조심사
	2021.11.17.	상정
		축조심사
	2021.11.19.	상정
		축조심사
	2021.11.22.	상정
		축조심사
	2021.11.24.	상정
		축조심사
	2021.11.26.	상정
		축조심사
	2021.11.29.	상정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 · 강화하여야 함.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임(안 제6조).

다. 탄소세의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이며, 2021년 4만원부터 2025년 8만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함(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0조).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 · 외교관 · 조건부 · 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사.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음(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자료

탄소세 시행 국가 및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단위: US$/tCO2e

연번	국가	탄소세율	배출거래제(ETS)*
1	스웨덴	119	EU-ETS
2	스위스	99	ETS
3	리히텐슈타인	99	EU-ETS
4	핀란드	68(수송용), 58(그 외)	EU-ETS
5	노르웨이	3(하한), 53(상한)	EU-ETS
6	프랑스	49	EU-ETS
7	아이슬란드	30(화석연료), 9(F-gases)	EU-ETS
8	아일랜드	28(수송용), 22(그 외)	EU-ETS
9	캐나다	21(연방정부), 주별로 상이	ETS
10	덴마크	26(화석연료), 22(F-gases)	EU-ETS
11	포르투갈	26	EU-ETS
12	영국	22	EU-ETS
13	슬로베니아	19(화석연료)	EU-ETS
14	스페인	16	EU-ETS
15	라트비아	10	EU-ETS
16	남아프리카공화국	7	ETS
17	아르헨티나	6(대부분의 액체연료), 1(화석연료, 광물석탄, 석유코크스)	미참여
18	칠레	5	미참여
19	콜롬비아	4	미참여
20	싱가포르	4	미참여
21	일본	3	지역단위로 운영중, 2022년부터 전체 확대
22	에스토니아	2	EU-ETS
23	멕시코	<1(하한), 2(상한)	ETS
24	우크라이나	<1	2021년부터 ETS 시행
25	폴란드	<1	EU-ETS

주 1) ETS(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
2) EU-ETS는 EU 28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대상국임

자료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2020. 5.)

6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52호



이 개 호

선 거 구	전남 담양군함평군 영광군장성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16.	제안
소위원회	2020.12.03.	상정
	2020.12.07.	상정
	2021.11.30.	상정
	2021.12.01.	상정
	2021.12.0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0. 11. 23.자로 직접 회부

제안이유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899호



고 용 진

선 거 구	서울 노원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6.18.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9.08	상정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현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이 시행 중)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작성지정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산업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수행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실태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참고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12-0517)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같은 항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8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상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서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3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8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0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1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134.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4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7.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1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17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37.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3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14.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2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학력 ·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3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6 · 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3.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1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1.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4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림어업회의소법안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1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32.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3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9.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2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청 · 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4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353호



김 한 정

선 거 구	경기 남양주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9.01.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 · 제23조 · 제25조제1항 · 제34조제2항 등).

참고자료

사업자 단체 관련 주요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적 근거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단체구성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성실협의의무, 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금지, 시정조치, 과징금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

배액배상제도 도입 주요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률	대상행위	면책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O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 금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	O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2019년 4월)	부당감액, 부당반품, 종업원사용금지, 보복조치	O
	대리점법	구입강제, 경제적이익 제공 강요	X
	가맹사업법	허위·과장정보제공, 부당중단·거절, 보복조치	O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X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O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고의·중과실 기한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O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중과실에 기한 개인신용정보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O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 인정 또는 반복	X

2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2484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9.08.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 ·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 · 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출장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지점 설치 관련 규제 체계의 변화

구분			현행		개정안	
설치	영업구역 내	지점	인가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신고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출장소			사후보고	2천만원↓ 과태료
	영업구역 외	지점			인가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출장소				
이전	영업구역 내	본점	신고	1천만원↓ 과태료	신고	1천만원↓ 과태료
		지점·출장소			사후보고	

상호저축은행 본·지점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0.
합계	317	309	301	306	297
본점	79	79	79	79	79
지점	204	198	192	195	192
출장소	17	16	14	14	12
여신전문출장소	17	16	16	18	14

자료 :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3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68호



강 은 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9.15.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주요발언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강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대재해 건수는 554건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등 원청의 귀책사유로 작업 중지에 들어갈 경우 원청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만 하청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어 하청 노동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934호



송 영 길

선 거 구	인천 계양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5선(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0.22.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1.12.01.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1.12.02.	상정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되는 주요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음.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 ·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미 의회에서는 반도체 · 5G를 비롯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대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과 대규모의 투자를 지원하였음.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반도체 · 인공지능 · 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국내에서도 반도체 ·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 ·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 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경쟁

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해당 기술의 국가 ·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지정 · 변경 ·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 · 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 · 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 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국가핵심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정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 평가 · 검증 ·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기업 · 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 · 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참고자료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구조 및 기술 지정 절차

	송영길 의원안 시행시
구조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 : 총리, 간사 : 산업부장관) → 기술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위원회 / 분야별 전문위원회 / 분야별 전문위원회
기술 지정	기업 신청 / 직권 검토 (관계부처 장관) → 전문위 검토 (필요시) → 기술조정위 검토 → 심의 의결 → 기술 지정 (산업부장관)

특화단지별 비교표

구 분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법적 근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조치법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조성 목적			전략산업의 혁신적발전 및 생태계조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	첨단투자 촉진
지정대상 관련기술			국가경제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기술 기반 지역 한정**	전자, 기계, 섬유 등 16개 기술 분야	첨단기술·제품 33개, 신성장동력 12개 기술분야
				다수의 대상기술에 따른 **대상지역 광범위**	
입지 조성 지원	인허가 의제 신속처리		○	X	X
	공공인프라 (전력·용수 등)		○ (비수도권 우선지원) * **지원근거 강화**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 정함	△	X
	산업기반시설		○ (비수도권 우선지원)	△	△
입주 기관 지원	비용 지원	설비 투자	○ (중소중견기업 한정)	X	○ * 유턴기업 한정
		연구 시설	○ (중소중견기업 한정)	○	X
	우선 신용보증 (신보, 기보 등)		○	X	○
특례	세제 지원		○	○	○
	부담금 감면		○ (중소중견기업 한정) * 농지법 등 **8개**	△ * §23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부담금 내용 無	○ * 농지법 등 4개
	규제 등 특례		○ (화학물질 규제 등)	○ (화학물질 규제 등)	X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06903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23.	제안
상임위원회	2021.0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3.04.	상정
		축조심사
	2021.09.08.	상정
		축조심사
	2021.1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1.11.25.	상정
		찬반토론
	2021.12.02.	상정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8 신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의 범위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에게 발행하도록 함.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10 신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함.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3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4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15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3763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1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12.09.	원안가결

제안이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31조의2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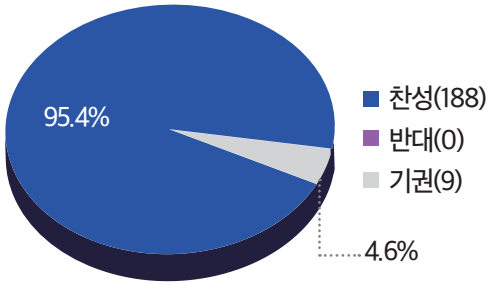
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대안반영폐기 법률안(6건)

[21029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21055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1095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등13인)
[21098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10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등10인)
[21087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1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2.08 / 2021.12.09
■ **발의자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97인 / 재적 295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97인(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9인)



찬성 (188인)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영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 웅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조태용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익표 황보승희 의원

기권 (9인)

고용진 김교흥 金炳旭 박용진 서동용 윤영덕 이수진(비) 이 영 한기호 의원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780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12.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12.09.	원안가결
	2021.12.10.	정부이송

제안이유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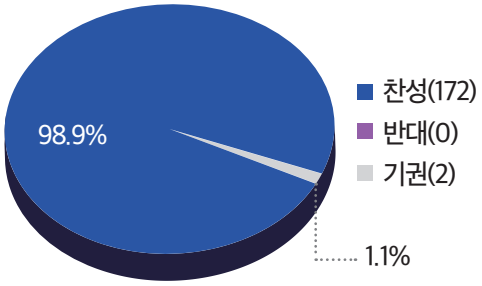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반영폐기 법률안(6건)

[211338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20인)
[21129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11327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1인)
[211273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9인)
[211319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7인)
[211296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23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2.08 / 2021.12.09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74인 / 재적 295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74인(찬성 172인, 반대 0인, 기권 2인)



찬성 (172인)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 웅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 정 박 진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신동근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태용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기권 (2인)

양정숙 황보승희 의원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782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12.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12.09.	원안가결
	2021.12.10.	정부이송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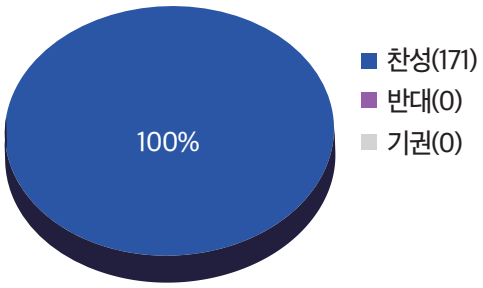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반영폐기 법률안(2건)

[21133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7인)
[2112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21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2.08 / 2021.12.09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71인 / 재적 295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71인(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0인)



찬성 (171인)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 웅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 정 박 진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신동근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태용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하태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761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1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12.09.	원안가결

제안이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함(안 제3조의2).

1)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함(안 제16조의2).

1)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

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마.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8 신설).

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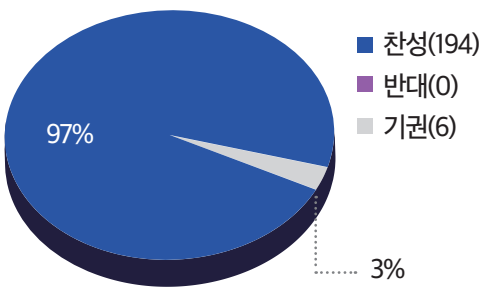
아.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의3).

대안반영폐기 법률안(8건)

[21018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21027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7인)
[2104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1인)
[2107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89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0인)
[21089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1인)
[2108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1인)
[21027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2.08 / 2021.12.09
■ 발의자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00인 / 재적 295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00인(찬성 194인, 반대 0인, 기권 6인)



찬성 (194인)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영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상희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 웅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조태용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기권 (6인)

강득구 김병주 서동용 전혜숙 한기호 홍석준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12월호는 2021.11.15.부터 2021.12.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12월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3일	14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국회본회의														● 391회 제12차	● 391회 제13차				● 391회 제14차			
국회운영위원회		●						●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정무위원회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	●	●	●	●	●	●	●	●	●	●						●				
교육위원회		●					●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정보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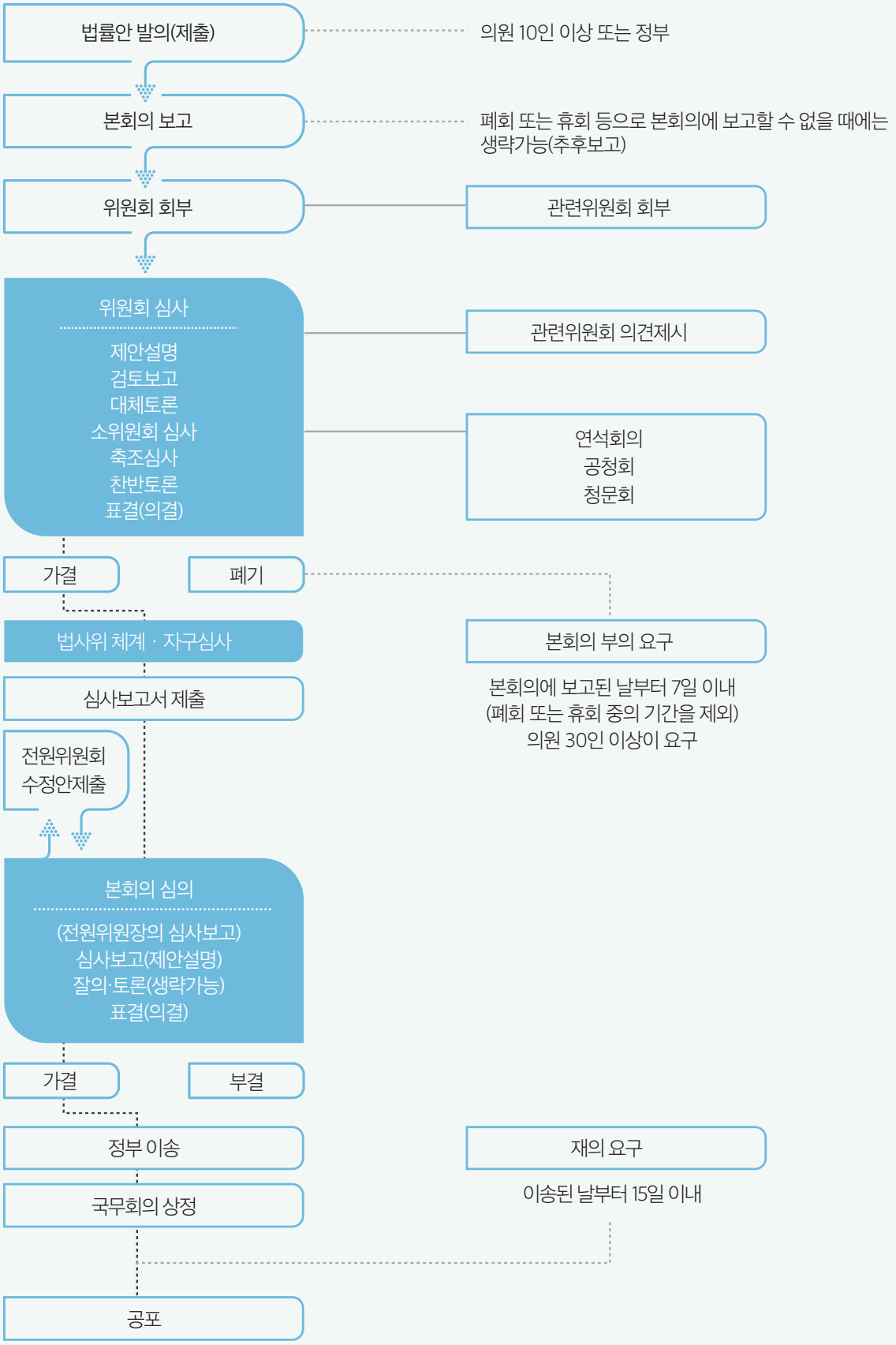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 7, 8, 10-16층)
www.draju.com